

긴급토론회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2014년 8월 21일(목)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응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 로 그 램

※ 사회 : 전용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노용래 의원

-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주민번호보호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김종한 (안전행정부 주민과장)
-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윤종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 주민번호와 대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수 손형섭

목차 Contents

- 제 1 장 배경
- 제 2 장 주민번호의 문제점
- 제 3 장 대체식별번호 논의
- 제 4 장 [참고]일본 마이넘버 제도
- 제 5 장 시사점과 검토
- 제 6 장 대체식별번호 사용
- 제 7 장 결론

제 1 장 배경
제 2 장 주민번호의 문제점
제 3 장 대체식별번호 논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카드3, KT, 의료3단체



1 배경

2014년도 1월 카드회사 개인 정보 대량 유출

그러나, ICT·금융업계 빅데이터 사업 활용 모색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8월 7일 주민번호 사용금지

그러나, 각 업체들 대체 대안 없어 걱정



1 배경

6개월 계도기간 후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조항 만드는 움직임

그러나, 예외 확대는 법규 취지 목각시킬 우려



2 주민번호의 문제점

1. 유출

*2014년 1월 카드사 유출

- ▶ 각 회사의 손실액은 3개월 영업정리로 1000억 원이상
- ▶ 1991년 주민등록 전산망 가동 이래 확인된 유출 4억건

*2차 피해 우려

- ▶ 불법유출 및 사용,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유출, 스텝
· 피싱 등



2 인증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2차 피해
- *공인인증서의 불편: 해외, 프로그램 오류
 - ▶ I-Pin 도 유사, 결국 MyPin 도 동일
- *프로그램 오류 : 인증(과정) 오류로 부당 결제
- *공인인증서, I-pin, Mypin 오류, 주민번호 기반의 문제



2 주민번호대체 ?

- *국민 77.2%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출되어 신경이 쓰인다"
-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 ▶ "매우 동의 한다" 7.8%
 - ▶ "동의하는 편이다" 38.3%
 - ▶ "보통이다" 가 32.2%
-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불법침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
 - ▶ 83.9%가 "관계있다"
 - ▶ 10%가 보통이다.
 - ▶ 6.1%가 "관계없다"



3 대체식별번호 논의

1. 폐지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제 역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 정보 노출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 ▶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고유한 번호체계 사용으로
- ▶ 대안 없는 폐지도 문제임

3 대체식별번호 논의

2. 마이핀(MyPIN)

*8월 7일부터 시행



*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카드 모형 Sample]

- ▶ 민간 신용평가기관과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위형성 검토해야
- ▶ i-PIN과 같이 MyPIN의 사용에도 핸드폰 인증이 사용되어 핸드폰이 없거나, 해외주재자 등 이용 불편
- ▶ 주민등록번호 및 이와 결합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여전히

3 대체식별번호 논의

3. 대체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 주소, 또는 범죄 정보에만 한정

• 나머지 의료보험, 연금보험, 또는 조세번호, 또는 금융거래 등에서 각각 다른 번호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사용

- ▶ 만능키인 주민등록번호에서 개별 및 열쇠 대체번호로
- ▶ 배열순서, 숫자 변경도 자유롭게
Cf 여권번호

3 소결

• 2014. 7. 31.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 MyPin 제도 실시

- ▶ 유증번호의 변경 허용: 뒷자리를 일부 바꿀 수 있도록
- ▶ 피해액의 3배 배상.
- ▶ 옹리특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 그러나, 주민등록 변경의 새로운 문제점 : 본인확인 불가? 국가기관, 은행 등

• 논의는 당위 문제 + 정책적 선택 문제

- ▶ 정보자기통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번호 신설이 타당, 그러나, 국민의 호응도, 제도 개편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 고려해야

4 각국의 식별번호

국가	ID 명칭	종도	도입 연도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1982년
싱가포르	사회보장번호(SIN)	주민등록증	1948년
스웨덴	개인식별번호(PDN)	주민등록증	1948년
노르웨이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증	1970년
헝가리	주민등록번호(KRN)	주민등록증	1953년
영국	국민보험번호(NINO)	사회보장, 세무	1948년
이탈리아	세무번호	세무	1977년
에스토니아	국민ID	주민등록증	1999년
네덜란드	시민서비스번호(BSN)	주민등록증	2008년
오스트리아	세무번호(TFN)	세무	1969년
캐나다	사회보험번호(SIN)	사회보장	1984년
미국	사회보장번호(SSN)	사회보장, 세무	1936년
덴마크	주민등록번호(CPR)	주민등록증	1968년
독일	세무식별번호	세무	2009년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종래 개별번호 사용

▶ 기존 주민 사회보장제도, 세금, 각종 면허, 범죄전과, 금융계좌, 가족관계 기초연금번호, 건강보험피보험자번호, 여권 번호, 납세자번호, 운전면허번호, 주민표 코드, 고용보험피보험자번호 등 행정기관이 개별 번호

*각 행정 기관이 개별적으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수직적 행정에서 중복 투자

2005년 6월 약 5,000만건의 연금기록이 미통합된 사건이 발생, 사회보장청이 조직적으로 조직에 관여하는 사태도 발생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마이넘버도입

- ▶ 2009년 민주당 연립정권번호제도 논의
- ▶ 2011년 6월 30일 사회보장·조세번호대강*
- ▶ 정권 교체 후 2013년 3월 자유민주당 내각에서 유사 법안이 다시 제출 5월에 제정
- ▶ 계획 : 2015년 국민에 대한 번호할당~ 2016년 1월에는 본격적인 사용

내용	주민표 코드	개인번호
사용범위	행정절차에만 한정	민간사업자의 이용 예정
변경여부	개인은 코드의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평생 불변
취급	비밀	비밀취급하지 않음

일본 주기네크 소송 결과

04년 2월 27일	大阪地裁	X(A)
05년 5월 30일	金沢地裁	O(B)
31일	名古屋地裁	X
10월 14일	福岡地裁	X
06년 2월 9일	大阪地裁	X
3월 20일	千葉地裁	X
4월 7일	東京地裁	X
11일	和歌山地裁	X
7월 26일	東京地裁	X
9월 29일	名古屋地裁	X
10월 26일	横浜地裁	X
11월 9일	宇都宮地裁	X
11월 30일	大阪高裁	O(A')
12월 11일	名古屋高裁 金沢支部	X(B')

O원고측 승소, X원고측 패소
(A')는(A), (B')는(B)의 항소심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기본이념

- 마이넘버를 활용: 연간 3000억 엔(한화 3천억 원)의 행정 비용을 삭감하는 효과/
⇒ 결제기관, 생명보험, 전기가스 등이 정보연대 기반을 통하여 연간 2500억엔의 비용감소 기대

2013년 5월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번호제를 법정화 ⇒

- ① 정확한 소득의 파악을 위한 번호제,
- ②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연대,
- ③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내용

- 개인번호(마이넘버) : 주민표 코드를 변함하여 얻은 자료, 당해 주민표 코드가 포함 된 주민표에 관련된 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용목적 법정

- ① 연금의 자격취득·확인, 수급, ② 고용보험 등의 자격취득·확인, 수급 등의 사무
- ③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징수 등의 의료 기타 사회보장에서의 절차, 복지분야의 혜택, 생활보호의 실시 등 저소득자 대책의 업무,
- ④ 국민이 세금당국에 제출하는 확정 신고서, 신고서, 조서 등에 기재, 당국의 내부사무,
- ⑤ 재해자생활재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 등으로 그 이용목적을 한정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내용



개인번호 카드는 IC카드로 예정



기타 ①시정촌의 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가 정한 업무, ②특정 개인을 식별하여 행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지자체, 민간사업자 기타의 자로 정령에서 정한 것이 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당해 사무에 이용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내용



시작시기에 대비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성별 · 개인번호가 기재된 종이 “알림 카드” 송부



알림카드를 자치체의 창구에 제시 ⇒

새로 얼굴 사진이 부착된 IC 카드
개인번호 카드로 전환



4 특정개인정보위원회

● 내각총리대신 소속
⇒ 제3자위원회로 지도 및 조언, 권고 및 명령, 보고 및 현장
검사와 같은 감독권한(동법 제50조~제56조)



개인번호 이용사무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하여 취급
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록 된
특정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한 때에 4년 이
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 병
과(제67조)



“누구도, 이법 등에서 정한 것을 제
외하고,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됨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 “분산관리” ⇒ 보유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번호에 관한 개
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개개인에 합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포털 설치



① 정보제공네트워크시스템, ② 마이포털,
③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 ④
정보를 보유하는 각 관계기관의 시스템,
⑤ 지방공공단체정보 시스템 기구의 시스
템의 다섯 개로 구분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 마이포털 등이 2016년 1월 개시예정
- ⇒ 정보제공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정보조회자 및 정보제공자의 명칭, 그 일시, 특정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정 (제21조~제25조)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평가

- 일본변호사연합 반대의 의견: 이 제도는 편리성은 있지만 부정이용 자에게 쉽게 노출
- 마이넘버제도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① 특정개인정보의 부정이용 문제, ② 특정개인정보의 누설도 문제, ③ 개인정보의 부정합 통합으로 부정합 DB를 연대 되면 더 많은 유출 우려, ④ 개인정보의 일원적 관리의 우려
- 일본정부가 정보제공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원적 관리가 가장 위험한 요소

4 [참고]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평가

- 마이넘버제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일본 업계는 2조엔을 넘는 IT투자 특수 예상
- 담당할 IT업계 인재제의 풀 부족
⇒ 우리 IT 인력 수출 전망

5 시사점과 검토

- 최근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누설과 그로 인한 금융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유출, 부당 이용 등의 우려가 높아 ⇒ 대체번호 검토 필요
- 주민등록 변경론, 마이핀 제도 :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하는 임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대체식별번호 제도 논의 계속 필요

5 시사점과 검토: 대체식별 번호

-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비 경제적분야로 주민등록 및 범죄 분야에 최소한으로 활용도를 축소 검토
- 개인식별에 관하여 일원적인 체제에서 이원적 혹은 다원적인 개인식별체계를 구축 검토
- 원하면 바꿀 수 있는 번호(수시 · 연간 · 5년 마다)

6 대체식별번호 구상(마스터키에서 각방 열쇠로)

- 사회보장 및 조세 금융정보에 한정된 신대체번호 구상
- 기존 주민등록 번호는 비경제적 분야로 주민등록 및 범죄분야에 한정
- 주민등록번호: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 관련 민권 분야: 신대체번호/ 보건복지부 : 신대체번호
- 기타 MyPIN 제도나 i-PIN제도 및 ID와 password를 통한 개별 인증제도도 다원적으로 공존 검토

6 대체식별번호 구상

- 기타 MyPIN 제도나 i-PIN제도 및 ID와 password를 통한 개별 인증제도도 다원적으로 공존 검토
- 기타 현재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이핀으로 대체되고 있음
- 불필요한 개인번호 요구 관행 개선 필요

7 결론

대체식별번호 → 국민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 실현, 개인정보 보안이 실현되는 사회 형성도모 해야 → **비용분석**, 국민적 합의 필요

보안성 높여야 ⇒

- ① 보안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사용, ② 웹·안드로이드 관리 강화, ③ 불필요한 정보통합 지양, ④ 정보의 암호화, ⑤ 관리자의 적정취급 및 의식 강화
- 개인정보 등의 정보보안성의 확보 ⇒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인프라

감사합니다.

The End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주민등록번호 보호

신훈민 |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1. 들어가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각종 토론회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았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체계 변경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국회에는 올해 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5건 발의¹⁾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2014. 5. 6.)과 주민등록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2014. 6. 9.)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1) 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2)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 4)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외 사용금지’를 권고하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변경을 원하는 국민에 한해 새로운 무작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²⁾.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던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간 검토 끝에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와 주민과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민등록번호

1) 김계남 의원(의안번호 9350, 2014. 2. 11.), 백재현 의원(의안번호 9371, 2014. 2. 13.), 민병두 의원(의안번호 9372, 2014. 2. 13.), 윤재옥 의원(의안번호 9387, 2014. 2. 14.), 이상규 의원(의안번호 9683, 2014. 3. 12.)

2)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로 변경” 국회 추진, 머니투데이, 2014. 8. 8. 5:53

호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핀'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범용 식별번호가 될 수 있는 마이핀을 도입했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과 별개로, 지난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다. 환영할만한 조치이나,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였지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13. 8. 6. 공포되었다. 무려 1년 전이고, 그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³⁾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연혁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본 발제문은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안의 문제점 검토

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성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하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다.

정부는 2012. 4. 20.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특성으로 각종 서비스 기준·검색값(Key 값)으로 널리 활용되어,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피해,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됨”이라고 적시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과거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없이는 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3) 정부가 2012. 4. 20.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비상대응팀)을 12년 8월까지 갖추고, 12~13년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법령·서식 일체 정비'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안전행정부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의 “마이핀[내 번호]에 대한 모든 것⁴⁾”이라는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심각성을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당초 국가안보 목적으로 1968년에 처음 발행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특별히 수집·이용·처리·제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공공·민간 사회 전반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 넓게 활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IT가 발전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 환경에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성인인증 및 중복가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2011.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4.5월 현재까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신고한 유출사고는 총 42건(회), 1억 1,868만명에 이른다.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사고는 27건(64.3%), 1억1,060만명(93.2%)으로, 거의 대부분 유출사고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주요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내·외부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해킹에는 협력업체 등을 통한 우회적 공격, 악성코드 감염, 관리자계정 탈취, 홈페이지의 취약점이나 노출정보를 악용한 해킹 등이 있고, 직원에 의한 유출에는 내부 직원이 외부와 공모하여 매매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불법 유출하는 경우, 위탁업체 등 외부 직원이 유출·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보면, 건수 기준으로 해킹이 15건(55.6%), 직원 유출이 7건(25.9%), 확인 중인 경우 등 기타가 5건(18.5%)이고, 인원수 기준으로 직원 유출이 8,394만명(75.9%), 해킹이 2,328만명(21.0%), 기타가 338만명(3.1%)이다.

구분	개인정보 유출 통계(인원수: 만명)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계(인원수:만명)			
	합계	해킹	직원	기타	합계	해킹	직원	기타
건수	42	23	12	7	27	15	7	5
비율	100%	54.8%	28.6%	16.7%	100%	55.6%	25.9%	18.5%
인원수	1억 1,868	2,838	8,630	401	1억1,60	2,328	8,394	338
비율	100%	23.9%	72.7%	3.4%	100%	21.0%	75.9%	3.1%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부행정망에서 계속해서 활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 안전행정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안보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끊임없는 유출로 이제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번호가 되었다.

4)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file/MyPin_Q_A.pdf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야 하는데, 만약 국가 행정 및 동원 시스템의 망에 침투하여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동원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 되면 주요 동원 대상 인력의 규모와 성별·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신분으로 국가의 동원 명령을 혼란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⁵⁾.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해외로 유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수입되고 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이를 회수하거나 과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한 국민 개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따라다니며 구속하는 족쇄가 될 것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이러한 점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한다.

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담고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해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목적별 번호제 도입 고려)
김제남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 (2018년부터 전 국민)	언급 없음
백재현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등	언급 없음	언급 없음
민병두	유출 되었으면 변경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사람, 법 개정 후 출생한 사람)	목적 외 사용금지 (법률로 예외)
윤재옥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이상규	자유로운 변경 (범죄사실 은폐 등은 제한)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 (2016년부터 전 국민)	목적 외 사용금지 (법령으로 예외)

윤재옥 의원안을 제외하고 모두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 2014. 8. 8.

변경 요건의 엄격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김제남 의원안과 백재현 의원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발생 우려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민병두 의원안과 자유로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이상규 의원안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접근해 있다. 다만, 김제남 의원안은 이상규 의원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별 번호제 도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국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병두 의원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은 사람과 법 개정 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 변경하는 다소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 목적외 사용금지 명시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에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민병두 의원안에서 법령이 아니라 굳이 법률에 의해서만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이하 ‘정부안’)

구분	기존	개선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국민 권리·의무 관련성 감안)
변경 요건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 요건 추가 ①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라. 정부안의 문제점

정부안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오류나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만 변경 규정을 둔 것에 비하면 한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변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를 해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잠재적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정부안에 제시된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중대한’ 피해라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중대한’ 피해라고 볼지 의문이다.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없이 18대, 19대 국회⁶⁾에 발의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변경해주어야 한다. 이를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마.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1) 자유로운 변경 혹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가장 중요한 신분확인장치인 ‘성명’의 변경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2010년 전후로 한해 평균 16만 1천여명이 개명 신청을 하고 있고 같은 기간 법원이 개명신청을 받아들인 인용률이 94.1%에 달한다. 하루 442명 꼴로 개명을 신청하는데, 94%인 415명이 매일 개명을 하고 있다⁷⁾.

대법원은 “...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고 판단하여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성명학이나 음양오행을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것조차 가능하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

6) 김재경 의원(의안번호 10241, 2010. 12. 9.), 김춘진 의원(의안번호 13013, 2011. 9. 1.), 박대출 의원(의안번호 6589, 2013. 8. 29.)

7) 하루 400명 개명 『이름 바꾸면 나아져』 상술기승, SBS기사, 2014. 1. 5.

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은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신분변조, 범죄 이용, 채무 면탈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새롭게 발급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로 구성

변경 후 새롭게 발급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구성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도입 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작업으로 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중복 발급 우려 때문이다. 생년월일·성별·지역코드·출생신고 순서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되면 전국적인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인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중복 발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지역번호로 이용한 일명 ‘전라도 홍어 검사기’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⁸⁾.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도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된 ‘13자리 번호 그 자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8) “일베에 『전라도 홍어 검사기』 등장”, 경향신문, 2014. 5. 8.

바. 소결론

초기 발급 오류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 위헌 소지를 없애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된 국민들의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정당하지 않은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관행이나 효율성은 결코 헌법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관행이나 효율성 때문에 위헌인 법령이 헌법합치적 법령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가. 주민등록법 수집 법정주의 의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 8. 7.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새로운 원칙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 원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사무와 주민관리사무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오랫동안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국민 통제에 목을 뺏던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부추겼고, 기업은 이를 이윤추구에 마음껏 활용하였다. 정부와 기업의 관리소홀로 주민등록번호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4억 여건이 넘게 유출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유출과 2, 3차 유출은 이미 헤아릴 수 없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외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라는 예외를 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예외 규정은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이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과규정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 정비 실태

정부가 현재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맞춰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866개(2014년 1월 기준, 안전행정부 발표)에 이르는 등 예외 범위가 넓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그나마 법령 정비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령을 다급하게 개정 한 사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 위하여 2014. 7. 14. 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4-237호를 통해서 무려 13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다. 대통령령 일부 변경으로 인해, 2014. 6. 9.부터 6. 30.까지, 2014. 7. 14.부터 2014. 7. 18.까지 두 번에 걸친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135개 대통령령을 검토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모두 합치더라도 고작 25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행정상 입법예고를 두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미이다. 135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며 불과 25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둔 것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에 걸린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급하게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자유롭게 하는 방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행정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한 사례⁹⁾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요구된다고 하나, 사인간의 거래에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은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 활용의 필요성이 긴급한 분야 외에도 수집을 허용한 사례

샵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9) 2)~4) 항목은 오픈넷 보도자료 인용.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오픈넷 보도자료, 2014. 8. 14. <http://opennet.or.kr/7317>

의3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는 샵메일이 행정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샵메일 운영이 일부 행정 목적을 띠더라도 굳이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행정기관이 고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한 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행정기관의 ‘고시’ 제정으로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들은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제1항 제3호는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며 이동통신사가 본인 확인 목적 이외에도 채권 추심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행정기관이 ‘고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엄격한 입법취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 소결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부응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해서 정부는 내부 단속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43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¹⁰⁾ 되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성실히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외 사용을 최소화하여 목적별 번호체계를 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10)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2억건, 과태료 14곳 9439만원 불과’, 한겨레, 2014. 1. 22. 22:22

4. 마이핀 도입의 문제점 검토

가. 마이핀 제도

안정행정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http://www.g-pin.go.kr>)에 따르면, 마이핀은 1)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2)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3)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4) 필요시 연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5)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공공I-PIN,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로 사기업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마이핀 제도의 문제점

마이핀 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이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마이핀은 사기업의 고객관리 용도로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고객관리는 기업의 몫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어 기업의 고객관리를 위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발급 등을 위해서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 등의 조합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 고객 중복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규모에 맞게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이 중점에 두었어야 했다. 민간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각 민간업체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며, 굳이 정부가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을 권장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기업에서 폭넓게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용 식별번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기업에 일부 대안일 뿐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마이핀을 제시한 것¹¹⁾”이라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각종 언론은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안 번호라고 보도했다. 정부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도 “마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라는 제목으로 마이핀을 홍보하고 있으며, 마이핀 발급업체(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도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

11) “마이핀은 임시방편, 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갖춰라”, 블로터닷넷, 2014. 8. 10.
<http://www.bloter.net/archives/202333>

<p>나이스평가정보 (http://www.niceipin.co.kr)</p>	<p>주민등록번호 대신 오프라인 대체수단 마이핀을!</p> <p>※ 8월 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됩니다.</p> <p>국내 최대 750만 아이핀 가입자가 선택한 NICE평가정보에서 마이핀(My-PIN)을 경험해보세요.</p>  <p>기업 마이핀 이용 안내 > 개인 마이핀 이용 안내 ></p>
<p>서울신용평가정보 (https://www.siren24.com)</p>	<p>마이핀이란?</p> <p>마이핀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 수단입니다.</p> <p>마이핀 활용범위</p> <p>오프라인 매장 ARS 고객센터</p>
<p>코리아크레딧뷰로 (http://ok-name.co.kr)</p>	<p>8월 7일 부터 모든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p> <p>오프라인은 마이핀! 온라인은 아이핀!</p> <p>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p> 

또한 정부는 현행 마이핀의 다음 단계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관리번호에 근간한 마이핀 서비스¹²⁾’를 준비하고 있다. 관리번호¹³⁾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이러한 준비는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했고, 마이핀은 임시방편일 뿐이니 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¹⁴⁾는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다. 마이핀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면, 마이핀은 범용 식별번호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12)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보도자료, 2014. 6. 10.

13) 관리번호가 정부에서 현행 주민번호체계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관리번호 - 발행번호(상용번호)’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된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두고 그에 연결된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가 검토한 대안이었기에, 관리번호에 근간한 마이핀 서비스는 성립할 수가 없다. ‘관리번호에 근간한 마이핀 서비스’에서 관리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14) “마이핀은 임시방편, 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갖추라”, 블로터닷넷, 2014. 8. 10.
<http://www.bloter.net/archives/202333>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 다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과실은 본인확인업체와 같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다양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대체수단 도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이핀과 같은 대체수단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이 보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이핀은 마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마이핀 역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역시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체수단이란 것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사용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노드’로 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의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이 함께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다¹⁵⁾.

다. 소결론

창조경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마이핀과 같은 단일한 범용 식별번호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주도 하에 마이핀이 활성화 된다면 다양한 신원확인 기술 개발은 요원하다. 기업의 몫은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의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4. 결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및 마이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5) 이장희,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pp.103, 20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대한 권고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2. 1.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대한 권고에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할 것을 재권고하였다. 2012년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나이,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절차를 마련할 것과 기업들로 하여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2014. 1.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수립,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하자 2014. 8. 8.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2014. 8. 8. 권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 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2)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 4)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외 사용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 사항을 재검토 하고 개인정보 문제를 전적으로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극단의 효율성은 산업사회를 끝으로 포기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집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충분히 보았다. 정보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토론 문]

윤종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개인정보보호 제도

가.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는 새로운 가능성의 원천이자 확대된 리스크의 원인
- 개인정보 생태계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
-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가치 면에서도 부정적
- 효과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가 선행되어야

나. 개인정보보호의 출발은 최소 수집

- 다다익선은 모든 경우의 미덕이 아님
- 수집의 근거가 아니라 수집의 불가피성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 최소 수집이 개인정보보호의 첫번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다. 정보의 집중과 남용

- 정보의 집중은 리스크를 증가 시킴
- 정보의 집중은 남용을 유인하는 요소
-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집중을 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인정보 끼리의 연결을 최소화 하는 것

라. 개인정보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는 침해에 대한 방어와 대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기본정책의 수립, 정보보안, 준법관리, 리스크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의 생성과 소멸에 걸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
- Privacy by Design (사전대비와 예방, 기본 설정값, 모든 프로세스에 포함, 상호보완, 전체 수명주기의 보호, 투명성, 사용자 중심)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 효율성의 추구가 가장 큰 리스크의 원인으로 된 대표적 사례
- 주민등록번호의 잦은 유출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
-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됨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그 자체로 최소 수집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큼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의 연결과 집중을 야기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단순한 방어의 측면이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3. 제도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모든 사업 영역의 목적과 프로세스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
- 분석의 초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를 찾는데 치중 되는 경향 - 예외 규정의 확대로 이어짐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 마저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불가피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향
- 사업자 입장에서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본인 확인 제도의 문제점

나. 대안의 한계

-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결책은 유출된 번호의 변경 가능성에 치중
-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거나 보편적 식별정보의 유지는 현실적으로 결국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아이핀이나 마이핀 같은 대안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집중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 야기
- 규제 제도나 규제 기관의 확대, add-on 형식의 보완은 효과보다는 비용의 증가를 야기

다. 목적별 식별정보와 보편적 식별정보

- 보편적 식별정보에 기반한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목적별 식별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여러 이유로 보편적 식별정보의 효율성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그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보편적 식별정보는 유지하되 변경의 용이성이나 난수 번호 제도의 도입이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한 시적으로 두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해보는 방안을 고려 - 이때 보편적 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험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토론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심우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반복적인 사고와 대책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정부의 대응책도 연이어 변모하여 왔음
 - 그러나 매년 정부의 대책은 상징적인 정책 및 입법의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 근원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4년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기본이 지켜지는 개인정보보호」도 이러한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이번 대책에 있어 고무적인 것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문제 인식이 일정부분 포함되었다는 사실임
 - 그러나 아직까지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부족하며, 특히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부처별 이해관계 그 이상을 넘어선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강력한 개인 식별체계가 전제된 우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부처별 이해관계 조율’이 아니라,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관점’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처간 실질적 협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임

2. 부처 이해관계의 편린들

- 부처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정합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이 저해 받고 있는 상황임
 -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

음

- 특히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에서도 문제 사안이 어느 기관의 소관 사항인지를 구분하지를 구분하지 못함
- 자기 부처의 소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타 부처에서 주된 규제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법률 개정이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이루어지면서 재차 법률간 부정합 발생
 - (예①)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개인정보 누출 등의 24시간 이내 통지·신고 vs.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예②)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vs.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국가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부처간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PIMS와 안전행정부의 PIPL이 있음
 -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보호 사안에 있어서는 현재 미래부의 ISMS가 존재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ISMS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번 정부 대책은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정책 및 입법 선전을 남발함
 - “개인정보 대청소” 정책은 운영하며, 이는 심지어는 해외 사업자의 공개형 SNS 뿐만 아니라 폐쇄형 SNS상의 개인정보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공언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심사소위 설치를 통한 상시적 법령간 정합성 유지체계 구축을 제시함(개인정보보호법 기준)
 - 기존 부처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인터넷진흥원 확충을 계획함
 - 기존의 인증제도와 별도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도입 추진(미래창조과학부)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추진(미래창조과학부)
 - 특정 기술 강제에 대해 재검토를 천명하면서도(금융위원회), 새로운 웹표준 공인인증서 개발 및 새로운 저장매체 개발(미래창조과학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추진(미래창조과학부)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옵트인(opt-in) 동의방식 도입 시도(방송통신위원회)

3.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제도적 방조

-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 원인은 본인확인의 만능키로 역할하는 주민등록번호(식별번호체계)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인식 전환은 이번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음
 - 법제도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치 온전한 본인확인 수단인 것처럼 자리잡고 있음
 - 아이핀, 마이핀 등 아무리 그 명칭과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 안전행정부 등은 장기적으로 민간 i-PIN 발급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현재의 i-PIN 본인인증은 금융 및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현재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별번호 체계를 지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임
 - 아무리 난수로 부여된 식별번호를 네트워크상에서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항상 유출 및 악용될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권고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적실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한 연후에, 후속작업을 진행했어야 할 것임
 -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의 활용은 현행 법률상 광범위한 예외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하생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인터넷상 전반적인 본인확인체계 개편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은 과연 법령상 활용 허용의 예외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논의임
- 현재 안전행정부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법령 및 그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규정(동법 제24조의2)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전 수조사를 마치고 수집 불가피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함
 - 현실적으로 보자면, 동 규정 시행 이후인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관한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허용 범위 설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임
 -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예외의 경우에는 입법권에 의해 설정된 예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물론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 허용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토론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마이핀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윤 명 | (사)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 국민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마련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연일 자고 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는 전화도 마음 놓고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과 민감함은 극도로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입법기관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차례의 논의들이 있었다. 아직도 그 논의는 끝나지 않았고 무단히 지속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소비자(국민)가 원하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들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더 이상 우리의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미 유출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대체수단만을 강구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근본부터 해결하려고 해야하지 그때그때 미봉책을 마련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보면 오히려 막지못할 더 큰사태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마이핀 정책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해 놓고 본

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개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소비자가 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가능하도록 정한 범위인지 아닌지를 얼마나 알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핀에 대해 소비자들은 마이핀 역시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소비자가 또 하나의 번호를 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매번 사용하지도 않는 번호를 일일이 외우고 다니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은 차라리 주민번호를 불러주겠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국민편의적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소비자를 더 번거롭게 하고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크다.

본모임에 소비자가 의견을 주거나 상담을 해 온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려 한다. 우선 마이핀을 발급받으려고 나이스평가정보(1600-1522)에 전화상담을 문의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상담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으려고 마이핀을 만들었다면서 왜 상담받는 것부터 그 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느냐는 의견으로 시작해서 과연 이 평가정보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마이핀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기관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다.

또 한 사례는 정부 홍보자료를 보고 본인이 마이핀을 발급받으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우선적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아이핀은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했다. 이 소비자는 왜 두가지를 꼭 가입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수많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거기에 마이핀 번호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면서 단체에 문제제기를 한 사례가 있다. 왜 본인인지 확인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신분증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문제제기였다.

오프라인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마이핀을 도입했다면 기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 증 등 여러 신분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소비자는 하게 된다. 본인확인과 개인식별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본다. 민간에서 사업자가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각 민간(개인)업체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는일인데 정부에서 민간(개인)업체 영업활동을 위한 개인식별 번호를 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굳이 마이핀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사용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이핀은 현재 주민등록번호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정보 역시 유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과연 그동안 아이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행된 제도인 데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효성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과연 마이핀이 지금 현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목적별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2)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하고, 4)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 외 사용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건강보험증번호,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주민번호와 같은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절대 회수가 불가능하다. 유출된 주민번호가 계속 사용되는 한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더라도 유출된 주민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범 정부 차원에서 유출된 주민번호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토론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

김영홍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1991-2014년 까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약 4억 1천만 건

언론보도와 각종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유출건수를 다 더하면 약 4억 1천 만 건. 이는 최소한의 수치. (첨부 자료 참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양산

▲심부름센터의 사생활 조사, ▲불법채권추심, ▲이동통신사 가입자 모집 마케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 마케팅, ▲대출 사기, ▲대부업체 대출 마케팅, ▲선거 후보자 홍보, ▲카드사 모집 마케팅, ▲보험 모집 마케팅, ▲각종 타겟 광고 마케팅, ▲휴대폰 불법 개통, ▲밀수, ▲개인 회생 신청 마케팅, ▲각종 사기(스미싱 (2013년 발생 건수 2만 9761건 피해액 약 56억원(김현의원 자료), 보이스 피싱(지난 5년간 약 3803억원 피해(김현 의원 자료(2014.8)) 등) 등에 이용.

○ 현재 최소 약 4억 1천만 건 이상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

디지털 기술로 복제가 용이한 이상 그 정보를 무가치 하게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최선의 정책임.

○ 안전행정부 8월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은 매우 미흡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을 ①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정부의 정책은 변경 허용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과거에 일어났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구제하지 않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변경이 허용되어야 함, 또한, 성폭력 피해로 한정할 경우 피해자(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음으로 정책의 취지와 무관하게 이중의 피해를 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사실 만으로 변경 허용이 허용된다면 불필요하게 피해 사실을 관청에 알릴 필요가 없음으로 피해자 인권에 훨씬 도움이 됨.

○ 신원, 신분, 실명 확인 방법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한국에서 성인인증은 나이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의 개인’을 확인 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규범과 관행을 만들었었음. 이러한 관행이 불필요한 아이핀 정책을 만들고 있고, 회원제 포인트 적립 카드의 경우도 실명 확인이 불필요 함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이핀과 같은 정책이 나오고 있음.

보편적 상거래는 화폐와 물품 교환으로 끝나는 것임. 사후 AS나 반품 등등의 문 제도 영수증이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적 규범임. 포인트 적립카드라면 연락처, 주소(배송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임.

성인 인증 등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개개인의 선택과 가정에서의 교육과 책임이 보다 중요해져야함. 성인 인증 정책이 청소년들을 보호 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움.

아이핀, 마이핀 등의 발급 주요 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들로 이곳에 인증과 가입정보등이 집중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함.

<별첨> 1991-2014년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현황

내부 공모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당시 검찰의 발표된 범죄 조직명칭)과 경찰이 공모해서 15만명의 주민조회전산망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사

건.

서울 남부경찰서 대공과소속, 마포경찰서 정보과소속 경찰관 및 공갈단 21명 구속.

검찰조사결과 경찰이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컴퓨터조회는 수배조회 2천8백만여건, 주민조회 2천5백만여건 등 모두 9천5백만여건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 (1991.3.20.)보도

● 1994년. 공무원과 DM(광고우편발송 업체)업체와 공모 292만건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국세청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 서울시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 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 등 2백92만건) 유출, 유통 사건 관련자 14인 구속. * 정보저장매체가 마그네틱 테이프

● 1997년. 당시 카드조회 업체 C&C 정보통신 1만6천명의 신용정보 유출사건.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로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사건. 관련자 5명구속.

해킹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0년. 3개업체(고객관리 대행업체, 인터넷쇼핑몰 가격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애니메이션방송사) 해킹으로 약 50만건의 ID와 비밀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2명 구속

● 2000년. 인터넷 사이트 46곳을 해킹하여 630만명의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 유출. 1명 구속

기업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판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1년. 네티앙 회원 15만명등 27개 인터넷 업체들이 93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집·직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L, S카드사, Y생명보험에 불법 판매.

2개사 대표 불구속 기소, 27개 업체 대표,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 및 15개사는 정식기소(회사대표 1000- 1,500만원을 선고, 직원 500~1,000만원 벌금선고)

● 2001년. BC카드, 국민카드, 다이너스 카드 고객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이용한도) 보험사에 불법판매 사건.

BC카드 법인과 이모(51)이사, 국민카드 법인과 최모(41)TM팀장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이너스카드 법인과 권모(41)TM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당시 검찰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정무위 김부겸 의원(금융감독원 자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판매 수익규모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판매대금) BC카드와 외환카드는 지난 3년간 각각 27억6,000만원과 14억6,000만원을, 국민. 다이너스 카드는 지난 한해에만 각각 1억4,000만원과 5,000만원등 54억원의 수수료 수익

* (개인정보구입대금) 라이나생명은 29억9,400만원, 신한생명 23억3,000만원, SK생명은 4,200만원, 교보생명은 2,200만원 등을 카드사에 지불

● 2003년. 듀오(결혼정보회사) 해킹을 통한 30만명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종교, 배우자 이상형, 연봉, 성장기 유출 사건. 1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게임-영화사이트 가입자, H신용카드 가맹점주 200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카드업자에 유출. 4명 구속. 1명 입건

합법을 가장한 개인정보매매 대기업 등장과 모든 불법적인 유형이 다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3년. SK가 자사가 보유한 1700만명의 OK캐쉬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까를 신한생명에 제공. (국민일보 2003년 10월 23일 보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2월 OK캐쉬백을 운영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2008-9년까지 일어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일부 회원의 경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의 법률 위반으로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OK캐쉬백은 아직도 59개 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위탁하고 있다.

● 2003년.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 15개 사이트 해킹으로 66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4명 구속 1명 불구속.

- 2004년. KTF 92만명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유출과 SK 이동통신 1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국내 보험회사 고객정보 5백만건 등 515만건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사건. 3명 구속, 12명 불구속
- 2004년. EBS EBSi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최고령 및 최저나이 이용자 260여명의 ID와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 배포.
- 2004년. OK캐쉬백(Cashbag)' 카드회원 20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현금처럼 사용되는 6600만점(1점당 1원)이 주인들도 모르게 도용. 1명 구속
- 2005년.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95건, KTF 42건, LG텔레콤 35건, KT 28건 등 총 2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 LG텔레콤 벌금 3000만원, KTF 2000만원, KT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주)MPC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 현직 경찰 1명 및 8명 불구속 기소.
- 2005년. 리니지(NC소프트) 계정과 비밀번호 유출사건으로 경찰측 추산(이 사건은 2006년에 최종 결과가 나왔다.)으로 122만건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 발생

초고속인터넷망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증가

- 2006년. 개인정보를 판매하려다가 경찰(전북)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CD와 컴퓨터에 KT,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고객 3백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비스가입일자와 설치장소, 상품명, 약정기간) 발견 압수. 1명 구속 6명 불구속.
- 2006년.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원 100만명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해킹을 통한 유출. 1명 구속
- 2006년. KT,하나로,두루넷,온세통신 771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시중에 불법 유출. 3명 구속, 9명 불구속.
- 2006년. 이동통신사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과 의사면허증 사본 등) 27만건 유출. 1명 구속 7명 불구속

● 2006년. 국민은행이 자사 회원 3천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자사 회원 3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가 담긴 파일을 첨부한 사건발생.

● 2006년. 결혼정보업체 해킹으로 57만명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휴대폰 번호 등) 유출 1명 구속.

불법 대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증가

● 2007년. 허위의 인터넷 대출사이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예금통장 사본 등) 231만건을 상위 중개업체와 사금융사들에게 제공, 알선중개료 명목으로 25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6명 구속 28명 불구속

● 2007년. 하나로텔레콤과 KT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73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건.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연령별, 이용 상품별로 고객을 구분, DB자료를 만들어 제3자에게 유통.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 300억원의 부당이익 얻었다는 경찰 발표.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 불구속. 방송통신위원회(2008) 이 사건으로 하나로텔레콤에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 2008년. 옥션 1천863만명(2010년 3월에 피해규모가 확정)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 등) 해킹 사건

● 2008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원 4만여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상태, 등) 엑셀화일이 두달동안 방치되는 사건.

● 2008년. GS 칼텍스 고객 1천151만7천125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담긴 CD 발견. GS 칼텍스 자회사 직원이 유출 4명 1년6개월 1년 실형 선고

● 2008년. 네이트 3500만 회원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해킹 사건.

● 2008년. S은행, C은행 3만1천여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내

역, 회사의 부서 및 직급) 유출 2명 구속 23명 불구속

● 2009년. 불법 대부업체 수사 과정에서 15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특히, 2만건은 주요 기업의 대표 개인정보 2만건이 포함) 유통 확인. 2명 구속

● 2009년.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300여명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담긴 엑셀파일 1년간 노출.

● 2010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된 각종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650만 건의 개인정보 유통 및 골프장과 콘도 회원 14만명의 개인정보(회원권 분양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출 사건 1명구속 26명 불구속

● 2010년. 티처원(교원 연수기관) 1만여명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 개인정보(소속 학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좌명, 연수일시, 소속 교육청) 유출

● 2010년. 중국해커와 공모해 금융 대출 사이트와 도박·성인 사이트, 쇼핑몰 등 국내 152개 사이트를 해킹 680만건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부산 경찰) 34명 불구속(서울 경찰)

● 2010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된 25개 온라인 사이트(아이러브스쿨, 대명리조트, 러시앤캐쉬, 현대캐피탈, 씨티파이낸셜, 제일캐피탈, 하나캐피탈 등)의 회원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2000만 건이 시중 유통(인천 경찰) 1명 구속 2명 불구속

● 2010년. 불법으로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해 150여만건의 각 계정 이용자(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피망, 하나포스)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유출. 1명 구속

● 2011년. 시중은행의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2000만건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출금한 수표의 번호,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 거래 지점 등)가 기록된 하드디스크 450개 유출 2명 불구속

● 2011년. 세티즌 해킹으로 인하여 140만명 회원 개인정보(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유출

- 2011년.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관리 소홀로 이미자, 조용필, 이승철, 이효리, 아이유, 2PM 등 유명 가수들을 포함한 회원 4천6백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출
- 2011년. 용산구청에서 43만명의 호적등본 파일(이름, 주민번호, 본적, 가족사항) 이 저장된 외장 하드를 분실
- 2011년.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에의하여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개인정보 유출. 당시 김황식 총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등 관용 여권을 신청한 공무원 4600여명의 정보도 포함됐다. 국정원(65명), 국방부(999명), 육군본부(285명), 경찰청(39명) 등 신상 자체가 보안사항인 안보 부서 당국자들도 상당수 포함
- 2011년. 메이플스토리(넥슨) 백업서버 해킹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7억 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하나SK카드 직원이 SK텔레콤 휴대폰 할부구매고객 9만7000여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스마트폰 할부채권 정보) 유출 1명구속 2명 불구속
- 2011년. 엡손 36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킹으로 유출 방송통신위원회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개인정보 불법 매매 수사를 통해 각종 시중은행, 신용카드사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1900만건의 유통 적발(부천 경찰)
3명 구속
- 2011년. 현대캐피탈 175만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킹으로 유출, 2명 구속
- 2012년. KT 가입자 873만 435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기종등) 유출. 5명 불구속 방송통신위원회 7억 5300만원 과징금 부과
- 2012년. 산와머니 203만 2524건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증인 정보)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2명, 산와머니 대표 불구속(이후 무죄 판결), 검찰이 개인정보의 다운로드를 입증 못함

● 2012년. 법무부 교정청 사이트 해킹 법무부 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연락처, 직책, 주민번호 등) 2461건 유출 1명 구속

● 2012년. 하이투자증권, 대출자 2300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대출일자 및 최종 변동일자, 대출잔고) 유출

● 2012년. 문자발송대행업체 N사가 출처불명의 유권자 15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출마자들에게 선거홍보 대행한 사건. 선거 후보자 374명이 100만~2000만원을 지불하고 N사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 (경기 경찰) 2명 불구속 입건

● 2012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550만건의 개인정보(주민번호,전화 번호, 이동통신 가입일과 거주지역, 금융사에서 빼낸 정보에는 채무관계 정보도 포함)유통 1명 구속 9명 불구속

● 2012년. 새누리당 당원 200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유출. 당 사무국 직원이 문자발송업체에 유출

● 2012년.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 회원 795만명, 쇼핑몰 회원 38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회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5-6억 원을 받고 유출. 텔레마케팅 업체는 보험사에 13억원에 되팔. 5명 불구속

● 2012년. 무주리조트 회원 개인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40만1700건 해킹 유출

● 2013년. 불법 유통되고 있는 1600여만명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이용하여 대출(무려 1600여만명에게 사기 문자를 보냈다고 함)사기.(대전경찰) 78억원의 부당이익. 3명 구속, 27명 불구속

● 2013년. 한화손해보험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5만7901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가 해킹·유출

● 2013년. SC·씨티은행 고객 개인정보 13만건 유출등 금융권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명,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계좌, 카드번호 등) 대출 모집인

에게 60만건 유출.

● 2014년. KB 국민카드에서 5천300만건, 롯데카드에서 2천600만 건 그리고 NH 농협카드에서 2천500만 건 등 약 1억4백만건의 개인정보(성명,이메일,휴대전화,직장전화,자택전화,주민번호,직장주소,자택주소,직장정보,주거상황,카드이용실적,카드결제계좌,카드결제일,카드신용한도,카드신용등급 등)를 신용평가회사 KCB 직원이 유출

● 2014년. 네이버 가입자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20만건 해킹 유출. 도용된 개인정보등을 이용 카페·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에 활용. 1명 구속 4명 불구속

● 2014년. KT 가입자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카드결제번호,카드유효기간,주소,이메일,고객관리번호,유심카드번호,서비스가입정보,요금제정보) 1천 171만 건 해킹으로 유출.

● 2014년. KT에서 7만6000건, LG유플러스에서는 250만건, SK브로드밴드에서 159만건 가입고객 정보, 시중 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101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706만건 등 개인정보 1230만건 유출(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 가공) 1명 구속, 17명 불구속

● 2014년. 보험사(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천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1150만건 개인정보 유출(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천남동경찰서) 3명 구속. 10명불구속

● 2014년.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2만 5천명 개인정보유출(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 학과, 휴대전화 번호) 협력업체 직원 1명 구속

● 2014, 약학 정보원,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개인의 진료 정보를 수집,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등록번호 1억2,632만여건을 수집 혐의 3명 기소 (법적 공방중인 사안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계에서 제외함)